

공급개요

☑ 공급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6층 ~ 지상 49층, 6개동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984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표기 : **당첨예정자** / 괄호 : (예비대상자)

주택형	공급 세대수	국가 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합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84A	180	4 (20)	2 (10)	2 (10)	4 (20)	4 (20)	1 (5)	1 (5)	18 (90)
84B	88	1 (5)	1 (5)	1 (5)	2 (10)	1 (5)	1 (5)	1 (5)	8 (40)
84C	90	1 (5)	1 (5)	1 (5)	2 (10)	2 (10)	1 (5)	1 (5)	9 (45)
99A	180	-	-	-	-	-	-	-	-
99B	272	-	-	-	-	-	-	-	-
104	174	-	-	-	-	-	-	-	-
합	984	6 (30)	4 (20)	4 (20)	8 (40)	7 (35)	3 (15)	3 (15)	35 (175)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일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구분	분양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11.06 (금) 예정	- 아르뮤제자이 홈페이지 (https://xi.co.kr/armusee) - 분양문의 : 1833-3367 -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9-7번지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11.16 (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09:00~17:30) -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10:00~14:00까지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당첨자 발표	2026.11.24 (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일정에 따라 분양일정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 시 재안내 예정)

☑ 본 청약안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06. 15.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시 청약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유의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판단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합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판단합니다.)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소형저가

주택요건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소형·저가주택등"은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란

-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비아파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안산시 및 경기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상	250 만원 이상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자격요건
/
유의사항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②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입주자저축 불필요)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기관부서

구분	해당기관	비고
국가 유공자 등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와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개정·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입주자선정일(동·호수 추첨 및 계약)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분양사무소 청약 접수 시 제출)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추가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대리인 접수 시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위임장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르뮤제자이 홈페이지 <https://xi.co.kr/armusee> 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개정·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